

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6] <개정 2026. 4. 28.>

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
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(제1조의2제16항 관련)

연번	납 입 대 상	납 입 금 액
1	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·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	80만 미합중국 달러
2	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·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	80만 미합중국달러
3	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·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출연	80만 미합중국달러
4	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·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출연	80만 미합중국 달러
5	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·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출연	55만 미합중국 달러
6	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·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출연	11만3천519 미합중국달러

비고

1. “연번”이란 대통령령 제31687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예 따라 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.
2. “납입금액”이란 아세안 및 한·중·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예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.